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10

발의연월일: 2020. 10. 6.

발 의 자: 박대출·조수진·김상훈

金炳旭・조태웅・김승수

김영식 · 신원식 · 이종성

윤두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단체 활동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신변에 대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법인 등기 열람 등을 통한 거 주지 노출도 가능한 상황임.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1회에 한해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주지 노출로 신변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법률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심의를 거쳐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
호) ① ~ ③ (생 략)		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
		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
		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
		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
		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
		<u>을 할 수 있다.</u>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